

Issue & News

I. 탄소배출 관련 사회적비용 등 탄소보상배출

; 상장기업의 재무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 미칠 듯

II.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관련 안건 금융위의 심의·의결 예정

; 대주주 변경 이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 등 그룹의 승계절차 막바지

탄소배출 관련 사회적비용은 탄소보상배출 등 상장기업의 재무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 미칠 듯

국내 주요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들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필요한 사회적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₂)이 재무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사회적비용은 이산화탄소 1톤을 감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통상 각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대용함.

정부의 2050 탄소중립(Net-Zero) 선언(2020년 10월)으로 그동안 관련 기업에게 제공해 오던 탄소배출권의 할당량¹ 감소와 유상할당 비율² 상승 등 배출권에 대한 정부 관리가 타이트해 지고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³ 도입을 준비 중인 EU가 2021년 중 도입 계획 초안을 발표 후 2023년 시행이라는 일정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이 탄소 감축과 관련한 사회적비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다양한 국제기관이 기후변화 협약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적정 탄소가격을 제안하고 있는데,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0년 40~80달러/tCO_{2eq}, 2030년 50~100달러/tCO_{2eq}를 적정 탄소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에서는 적정 탄소가격을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정 탄소가격을 제안하는데, 선진국은 톤당 75달러, 고소득 신흥시장은 50달러, 저소득 신흥시장은 25달러로 수준임.

현재 국내 거래소시장(KRX)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단위당 19,450원(2021/07/07, KAU21 기준)으로 달러로 환산(1,138원)하면 17달러 수준임. 이처럼, 국내 탄소가격이 17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IMF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적정가격 중 저소득 신흥시장(2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임. 향후 국내 탄소 배출권가격이 17달러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상장기업은 톤당 탄소 감축을 위한 사회적비용이 그만큼 상승할 것으로 보임.

표2에 의하면, 환경부(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NGMS)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총 6억 4,860만톤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7.3%, 현재까지 최정점을 기록했던 2018년 7억 2,760만톤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확정배출량은 2020년 9월 발표).

특히, 2020년 잠정 배출량 6억 4,860만 톤 중에서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온실가스 할당

¹ 배출권할당량: 정부의 사전할당량(3차 계획기간): 2021년~2023년 589백만톤 → 2024년~2025년 567백만톤

² 유상할당비율: 1차(2015년~2017년) 전량무상 → 2차(2018년~2020년) 3% → 3차('21~'25년) 10%

³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EU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⁴ tCO_{2eq}: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산화탄소 1톤 또는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함)

배출권이 있는 92개사와 非30대 그룹 소속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0개사 등 총 192개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억 4,585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37.9%를 차지함.

표3에 의하면, 국내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할당배출권인 <배출허용량>을 지정받은 상장기업은 총 92개사이며, 이들 기업들의 탄소배출량과 탄소감축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들 기업들의 영업이익(3년 평균)과 탄소감축에 따른 사회적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탄소보상배율(영업이익/사회적비용)은 탄소가격이 최근 17달러에서 46.5를 기록하고 있으나, 탄소가격이 각각 25달러, 40달러로 상승하면 탄소보상배율도 각각 39.8, 26.5로 떨어짐. 즉, 각 사의 영업이익 대비한 탄소감축에 따른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게 됨.

특히, 탄소보상배율이 10 이하인 기업(롯데케미칼(주), (주)LG화학, 한화솔루션(주), SK케미칼(주), 효성화학(주), 코오롱플라스틱(주), (주)티케이케미칼, (주)KCC글라스, (주)코리아서키트, 현대제철(주), (주)영풍)들은 탄소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그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음. 다만, 이들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3개사((주)티케이케미칼, (주)KCC글라스, 현대제철(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의 정도는 경감될 여지가 있음. 어쨌든 이런 탄소감축 관련 사회적비용의 증가는 해당기업의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전개될 수 있음.

표1. 글로벌 탄소가격의 지역별 적정가격 시나리오

	선진국 (Advanced countries) (미국, EU, 중국 등)	고소득_신흥국가 (Higher-income emerging economies)	저소득_신흥시장 (Lower-income emerging countries)
탄소 최소가격 제안	75\$	50\$	25\$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 (한국거래소, KAU21기준)		-	17\$

자료: IMF(The critical role for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s, 2021.06.18)

주: KRX KAU21 가격은 2021/07/07 기준

표2.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추이

	확정				잠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배출량	692.5	693.5	709.7	727.6	699.5	648.6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1/06/07)

표3.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92개사)의 탄소가격 시나리오별 탄소보상배율 추이

	영업이익 (a)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배출권 시세	사회적비용 (b)	탄소보상배율 (a/b)
탄소배출권 가격					
- 17달러 기준	851,711억원	9,404만톤	19,450원	18,291억원	46.5
- 25달러 기준	851,711억원	9,404만톤	22,760원	21,403억원	39.8
- 40달러 기준	851,711억원	9,404만톤	34,140원	32,105억원	26.5

자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주: 영업이익은 3년 평균, 탄소배출권 시세는 2021/07/07

(안상희 본부장 02-769-3020)

금융위, 13일 정례회의에서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 심의·의결 예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정례회의가 13일 개최되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례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했으며 논의를 위해 추후 정례회의로 해당 사안을 연기하였음.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른 것이며 앞서 삼성그룹 측은 지난 4월2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음.

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20.76%, 보통주 4천151만9천180주) 중 50%(3/6)는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약 33%(2/6), 이서현 이사장이 약 17%(1/6)을 상속받았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기존 0.06%에서 10.44%로 증가하여 개인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으며,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게 됨. 또한 삼성생명은 지난 2021.04.30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통해 ‘이건희 회장 외 7명’에서 ‘삼성물산 외 8명’로의 변경을 밝힌 상황임.

이번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 대상에 오를 예정임.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원회의 승인 받았음.

금융위는 본 안건에 관하여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할 예정임.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결과 상 두 대상자의 대주주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이 이번 심의·의결의 기준임.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으며, 채무불이행자에도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안 통과에 별다른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삼성그룹의 승계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임. 삼성그룹의 주력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 안이 가진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됨.

표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대주주 정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표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대주주 변경승인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중현 연구원 02-769-3768)

본 보고서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강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